

##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·관리조례중 개정조례(안) 검토 보고서

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·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2002년 11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, 2002년 12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음.

### 1. 제안 이유

- . 주민의 건강과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 시설의 확대 등 체육활동 여건을 개선하며 각종 체육활동을 지원 하기 위하여 그동안 조성된 체육진흥기금의 목표액을 현실에 맞게 설정하고, 재원 확보를 위해 시비 출연금의 출연 기간 및 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골자

- . 체육진흥기금 재원중 시 일반회계 출연금의 조성 기간과 조성 목표액을 변경(안 제3조 제1호)
  - 현행 : 1998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매년 3억원씩 출연
  - 개정안 : 조성목표액 50억원 설정과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일정액을 출연

### 3. 법적 근거

- . 현행,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·관리조례에서 정한 기금 조성 규정을 자체적으로 개정 하려는 개정 조례안 임.

### 4. 검토의견

- . 체육진흥기금 조성 목표액 50억원 설정과 조성 기간까지 2003년부터 2010년까지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으로,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·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본 기금은 2002년도까지 16억 4,566만 8천 원을 조성하여 당초 목표액 9억원을 크게 초과 달성하였으나, 체육 진흥 발전을 위한 체육시설의 확대 등 체육활동 여건을 개선하고, 각종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, 본 조례를 개정하여 조성 목표액을 대폭 증액 설정하고, 기간까지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, 특이한 큰 문제점은 없으나 조성 목표액이 과다하지는 않은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